

# 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 연구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호효림(Hyo-rim Ho)\*

## 목 차

- |                            |                       |
|----------------------------|-----------------------|
| I. 서 론                     | V. 중국 실용신안 권리보호 대응 전략 |
| II. 중국 실용신안의 발달 및 현황       | VI. 결 론               |
| III.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         |                       |
| IV.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와 실용신안 특허분쟁 |                       |

## 국 문 요 약

중국의 실용신안은 발명 특허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기한이 짧고 수권속도가 빠르며 발명 특허와 마찬가지로 독점권이 있어 기업이 빠른 속도로 시장을 선점하는데 유리하다. 그러나 중국에서의 실용신안권은 실질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성이 낮은 편이고 무효 기각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명 특허보다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국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자국의 실용신안을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권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정책을 제정하였고 특히 특허침해소송 시 특허권평가보고를 근거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자와 특허권 권리분쟁의 당사자를 사법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특허권평가보고 제도를 구축함으로써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가 답변기한 내에 특허권 무효심판요청 시 특허권평가보고가 실용신안 특허권에 신규성, 진보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특허권이 안정성이 없다고 기록하지 못할 상황에서 법원은 심판을 중지하지 않고 재심사위원회의 특허권 무효심판 결정의견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어 사법 절차의 효율을 높이고 특허권자의 권리유지 시간을 가속화하는 데 유리하다. 그러나 실질적인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와 무효심판제도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는 현행 중국의 실용신안제도를 분석하고 한국의 실용신안제도와 비교를 통해 중국의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본질과 역할을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 소송의 실제 사례를 통해 특허권평가보고의 결과로 인한 변수를 분석하여 특허권평가보고와 무효심판이 충돌하는 실질적인 원인을 규명하고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유효성과 권리 보호를 위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의 활용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핵심어 : 특허권평가보고서, 실용신안, 무효심판, 특허권리 보호

※ 논문접수일: 2016.11.26, 1차수정일: 2016.12.22, 2차수정일: 2017.1.9, 3차수정일: 2017.1.27 게재확정일: 2017.2.1

\*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shailyn@kaist.ac.kr, 010-5039-9176

## ABSTRACT

---

China's utility model as a supplement to the invention patent, has short application duration, fast authorized speed, and has the same exclusive rights with patents, so companies can quickly dominate the market. But the utility model does not need to carry out substantive examination, so has lower stability, high frequency of invalid to accepted, so compare with the invention patent, difficult to be protected. In order to actively encourage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to promote their inventions, and protect domestic patents, China established a protection policy of patent evaluation report for the utility model rights, especially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can be used as evidence in a patent infringement trial, to provide judicial remedies for utility model patentee and the party of patent disputes. Many experts believe that the establishment of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can improve the stability of the utility model patent right, and when the defendant request for invalidation of the patent right in the defense period, if there is no novelty, creativity lost or no other reason has not led to the stability of patent right given in a patent evaluation report of the utility model patents, the court may not suspend the trial,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Patent Reexamination Board makes the patent invalid declaration decisions,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judicial process, accelerate the patentee's time. However, in practical patent infringement,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invalidation system are in conflict. In this paper,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China utility model system and compared with the South Korean utility model system, review the role and character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and through the actual cases of the utility model patent infringement litigation, analysis possible variates from the decision of patent evaluation report, to find out the reason of the patent evaluation report system being in conflict with the invalidation system, and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for protecting Utility Model with China's Patent Evaluation Report.

Key Words : Patent Evaluation Report, Utility model, Invalidation system, Patent right protection

---

## I. 서 론

지적재산권 보호제도로서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는 발명과 창작 활동을 장려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과학기술 혁신 능력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 제도는 중국의 특허보호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실용신안은 중국에서 발명과 비슷한 보호를 받고 있고, 심사절차기간이 짧으며 비용도 또한 저렴하다. 이에 따라 중국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실용신안의 출원전략을 통해 제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최근 많은 외국기업도 중국에서 활발하게 실용신안을 출원하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이 제도를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발표한 ‘중국실용신안 특허제도의 발전상황’(全文)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실용신안 출원 건수 상위 10위내의 외국기업은 모두 유명한 다국적 기업이고, 그 중 미국과 일본 기업의 출원 수가 가장 많으며, 본사 차원의 출원 외에도 중국에 설립된 자회사, 독자회사 및 합작회사 명의의 실용신안 출원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2011년 미국 애플의 실용신안 출원 건수는 2008년 대비 268% 증가했다<sup>1)</sup>. 그러나 중국 실용신안의 안정성과 권리보호의 실효성은 국내외 전문가들이 수년간 고민해 온 핵심 문제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정부는 특허 품질을 확보하거나 특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실용신안과 관련된 법규를 끊임없이 수정해왔다. 2008년 제3차 개정<sup>2)</sup>에 따르면, 특허 검색보고서제도의 대상 범위가 실용신안에서 디자인까지 확대되었고, 특허검색보고서의 명칭은 특허권평가보고서로 변경되었다. 또한 신규성, 진보성뿐만 아니라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는지 전면적으로 분석 및 평가한다. 또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관련된 특허침해 분쟁에 대해, 인민법원 또는 특허관리기관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가특허행정부처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한 검색,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침해 심판 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sup>3)</sup>.

그러나 최근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가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제도로 발전되고, 사법(司法) 실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소송에서는 여전히 구(舊)검색보고제도의 특허 무효제도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서로 충돌의 여지가 있다. 앞으로 중국 내 실용신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와 더불어 분쟁 또한 늘어날 전망이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청구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1)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2012년12월21일 발표된〈중국실용신안 특허제도의 발전상황〉全文

2) ‘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의 수정에 대한 결정’ 2008년12월27일 통과, 2009년10월1일부터 시행

3) 중국특허법 제 61조

본 논문에서는 실용신안의 관점에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의 본질 및 역할을 재검토하고 특허권평가보고서가 특허운영 부분의 특허침해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여 중국 진출을 위한 한국기업들에게 실용신안 권리보호 전략을 제안할 것이다

## II. 중국 실용신안의 발달 및 현황

중국의 실용신안 제도는 발명 특허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소규모의 발명과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발명 특허와 법적 효력이 같다. 권리자는 실용신안에서 보호하고 있는 발명과 창작물을 타인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저지시킬 권리가 있다.

특허제도가 구축되기 시작한 초기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은 상대적으로 열악하였고 많은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작 수준도 낮았다. 이러한 소규모의 발명과 창작은 기술력이 높지 않은 특허였지만 과학기술과 경제 및 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했다. 따라서 중국 실용신안 제도는 이런 발명과 창작을 보호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 1. 중국 실용신안제도의 구축과 개혁

1985년 4월 1일 정식으로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이하: 중국특허법)규정에서는 발명, 실용신안과 디자인 등 세 종류의 발명과 창작물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다. 1985년 특허법 45조의 규정에 따르면 실용신안 특허권<sup>4)</sup>의 보호기한은 5년으로 이후 3년까지 갱신이 가능하다<sup>5)</sup>.

1992년 개정 후<sup>6)</sup>, 중국특허법은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한 보호를 한 층 강화하였고, 실용신안 특허권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동시에 특허권의 갱신 절차를 철폐했다. 특허법의 수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중국 실용신안 특허제도는 개선되었고, 여러 차례 수정을 거친 후 실용신안 특허보호기한은 국제법상의 보호기한과 일치하게 되었다.

2000년, 중국 특허법은 권리 부여 후 신규성, 진보성, 및 실용성을 구비하는 실용신안에 대해 검색보고제도를 추가하여, 실용신안 특허 출원인과 특허분류 발생의 당사자에게 사법적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sup>7)</sup>.

4) 중국의 특허제도는 한국의 특허제도와 달리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을 통틀어 특허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 본 논문에서 발명 특허, 실용신안 특허, 및 디자인 특허로 통일함.

5) 1984년3월12일 제6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4번째 회의에 통과됨

6) 1992년9월4일 제7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7번째 회의(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의 수정에 대한 결정-제2차 개정

2008년 개정 후의 중국특허법에는 동일한 출원인이 같은 발명에 대해 동시에 실용신안 특허와 발명 특허를 출원할 경우 초보 심사 범위를 확대하였고, 실용신안 특허의 수준을 높였으며, 실용신안검색보고를 특허권평가보고서로 전환하여 평가의 범위를 확대하였다<sup>8)</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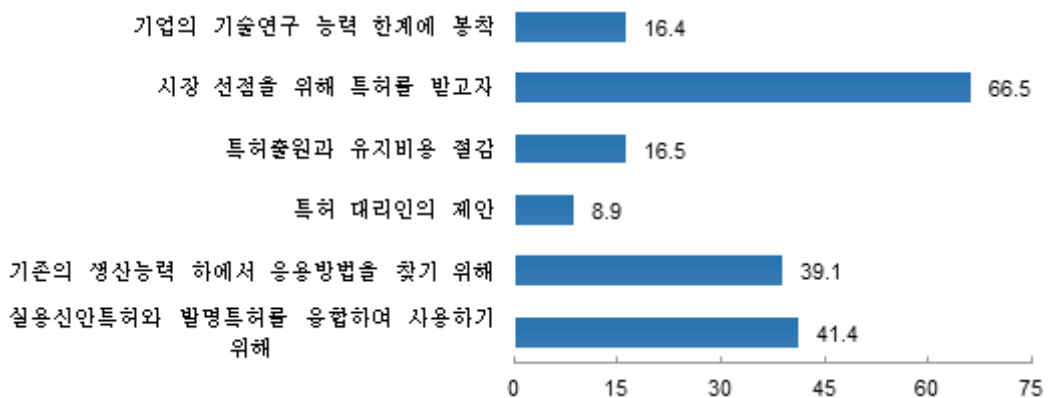
또한 개정된 특허법은 특허침해 소송에서 종래기술항변제도를 추가했다. 특허침해 소송에서 피고가 실시하는 기술이나 디자인이 기존의 기술 또는 디자인에 속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하면, 특허 침해가 아니다<sup>9)</sup>. 즉, 피고가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기술이 출원일 전의 종래기술인 것을 입증하는 경우, 법원 또는 행정기관은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즉시 입증 할 수 있다.

## 2. 중국 실용신안 출원 및 사법적 보호 현황

중국에서 실용신안은 제품의 형상, 구조 혹은 결합으로 인한 실용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적 방식이다<sup>10)</sup>. 실용신안은 실질심사가 없고 권리취득 속도가 일반적으로 발명 특허보다 빠르기 때문에 중국 내 많은 기업들은 보편적으로 실용신안을 선호한다.

2012년 중국 특허 조사에서, 기업이 출원하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목적을 놓고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1>에 따르면, 2011년 66.5%의 기업이 시장 선점을 위해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

<표 1> 2011년 기업 실용신안과 디자인 출원의 주요 목적(기관: %)<sup>11)</sup>



7) 2000년8월25일 제9회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17번째 회의 <중화인민공화국특허법>의 수정에 대한 결정-제2차 개정

8) <중국실용신안 특허제도의 발전상황> 全文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지식재산국, 2012

9) 중국특허법 제62조

10)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제2조

11) 출처: <기업특허출원목적조사 와 실시 및 산업화 연구>2012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13면

를 서둘러 출원했다고 한다. 이 외에도 41.4%의 기업이 이런 종류의 특허를 주로 실용신안, 디자인, 발명 특허를 위해서 출원하였고, 39.1%, 16.4%의 기업은 기존의 생산 능력에서 응용된 방식을 마련하거나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에 출원을 하였다고 한다. 그 밖에 16.5%의 기업은 특허출원과 유지비용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8.9%의 기업은 대리인의 제안으로 출원했다고 한다.

중국에서 출원 진행 시, 발명특허와 비교하면 실용신안의 가장 큰 장점은 심사의 처리기간이다. 발명특허는 권리 부여 전에 실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즉 심사관이 기술방안에 대한 검색을 수행하고 출원일전의 종래 기술과 비교하면서 신규성과 진보성 등 규정에 부합하는 특허성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한다.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특허 출원은 적어도 한 번 이상의 의견 통지서(1차 의견통지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원인은 해당 의견서통지서의 보정과 답변을 위해, 일반적으로 3개월의 준비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실용신안은 실질 심사를 거치지 않아, 발명특허보다 심사 처리기간이 짧고 출원을 신속하게 가능하며 현재 중국 현지 대리인을 통해 의뢰하면 대부분은 5-6개월 정도 권리를 부여 받을 수 있다. 만약 심사관이 종래 기술의 검색을 통해(초보 심사), 신규성 또는 진보성에 대한 의견통지서를 발송하면 일반적으로 답변 시간이 2개월로 제한되어 비교적 간단한 보정 의견 검토를 거쳐 권리 부여 받을 수 있기에 심사의 처리기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sup>12)</sup>.

따라서 실용 신안은 발명특허보다 진보성에 대한 요건이 낮고 출원명세서에 현저한 실질적인 흠결이 없으면 간단하고 신속하게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비용도 저렴하다. 또한 권리를 부여 받은 후 발명과 같은 보호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좁은 보호 대상의 범위가 좁고 보호 기간도 짧지만 대부분의 기업, 특히 혁신과 창신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에 있어, 실용신안 출원은 신속하게 시장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으로 사용될 수 있다.

2014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은 국내외의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세 종류의 특허출원 접수현황 연도 별로 조사하여 중국 국가통계국의 자료를 참조해 세 종류 특허의 출원 현황을 분석하였다. 아래 <표 2>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및 중국 국가 통계국이 2016년에 발표한 2015특허 통계년도보고에 기재된 1985.4-2015.12 중국 국내외 특허출원 접수 현황이고, <표 3>은 <표 2>에 근거하여 2011-2015년 중국 국내외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에 대해 각각 비교하여 작성된 그래프이다.

<표 2>의 데이터 및 <표 3>의 그래프에 따르면 2010-2013년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각각 국내의 총 수치를 비교했을 때, 실용신안이 가장 많고 연간 출원 건수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3년부터 발명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서 실용신안 출원 수와 비슷하게 되었다. 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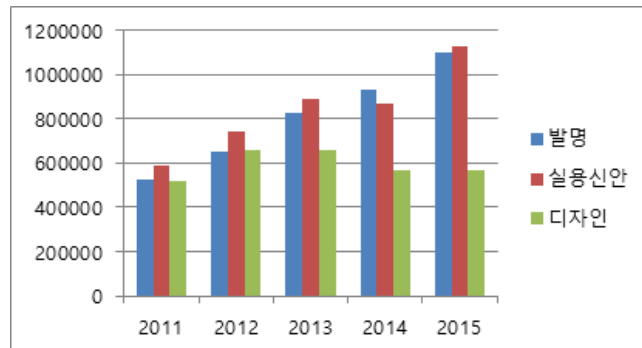
12) 袁泉 “중국실용신안 특허제도 개요” 실용신안 심사부, 2015第23期 27면

备案文号：国统办函 [2016]445号 유효기한：2019年9月

〈표 2〉 1985.4-2015.12 중국 국내외 특허출원 접수(건) 현황<sup>13)</sup>

		발명 Invention	실용신안 UtilityModel	디자인 Design	합계 Total
합계 Total	1985-2010	2323494	2411776	2297211	7032481
	2011	526412	585467	521468	1633347
	2012	652777	740290	657582	2050649
	2013	825136	892362	659563	2377061
	2014	928177	868511	564555	2361243
	2015	1101864	1127577	569059	2798500
국내 Domestic	1985-2010	1428130	2394975	2172262	5995367
	2011	415829	581303	507538	1504670
	2012	535313	734437	642401	1912151
	2013	704936	885226	644398	2234560
	2014	801135	861053	548428	2210616
	2015	968251	1119714	551481	2639446
해외 Foreign	1985-2010	895364	16801	124949	1037114
	2011	110583	4164	13930	128677
	2012	117464	5853	15181	138498
	2013	120200	7136	15165	142501
	2014	127042	7458	16127	150627
	2015	133613	7863	17578	159054

〈표 3〉 2011-2015년 중국 국내외 발명, 실용신안 및 디자인 특허출원 비교



실용 신안 출원은 감소하지만, 〈표 4〉와 같이 2015년 실용신안의 출원 등록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13) 출처: 2015년 중국특허통계년도보고서 <http://www.sipo.gov.cn/tjxx/jianbao/year2015/a/a2.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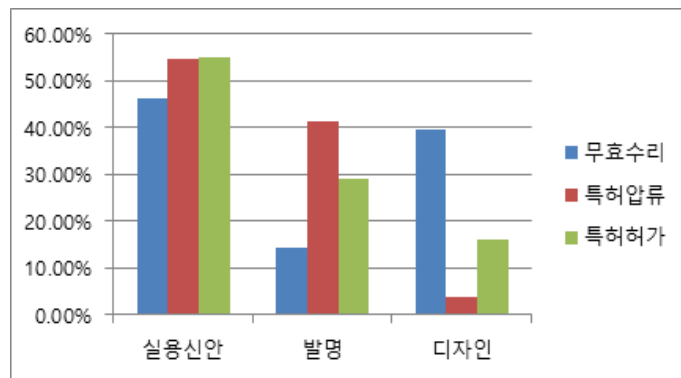
중국 국내 및 해외의 특허구조 분포를 살펴보면, 과학기술 수준이나 창조력이 비교적 높은 발명 특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실용신안과 디자인이 국내 특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표 1>에서 본 기업의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 동기화도 부합한다. 중국에 있는 해외 특허는 다년 간 발명 특허 위주였다. 그러나 2010년부터 중국 내 해외기업 실용신안 특허 출원이 늘어나, 5년 간의 출원 수가 과거 24년 간 총 출원 수의 2배를 넘어섰다. 아래의 <표 4>는 2015년 발표한 실용신안 출원현황 및 상기 2010-214년 실용신안 통계에 근거하여 실용신안의 성장 추세를 보여준다.

<표 4> 2010-2015년 실용신안의 증가추세<sup>14)</sup>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실용신안출원	40.9만	58.5만	74.0만	89.2 만	86.8 만	112.8만
동기대비 성장률	31.9%	42.7%	26.4%	20.5%	-2.7%	29.8%
심사처리기간	-	4.7개월	4.4개월	4.3개월	3.5개월	2.9개월
실용신안발급	34.4 만	40.8 만	57.1 만	69.3 만	70.8 만	87.6 만
동기대비 성장률	69.0%	19%	40.0%	21.4%	2.2%	23.8%

그 중 2011년 접수한 실용신안 출원은 58만 5000 건이고, 심사처리기간은 4.7개월이며, 2012년 접수한 실용신안 출원은 74만 건으로 동기대비 26.4% 성장하였고 심사처리기간은 4.4개월로 축소되었고, 발급한 특허는 57만 1000건으로 동기대비 40.0% 증가하였다. 2013년 접수한 실용신안 출원은 89만 2000 건으로 동기대비 20.5%성장, 심사처리기간은 4.1개월로 단축되

<표 5> 2014년도 각종 특허의 소송, 압류, 허가<sup>15)</sup>



14) 출처: <중국지식재산권 보호현황> 白皮书—중국 국가지식재산국, 2010-2015

15) 출처: 2014실용신안특허전략회의-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실용신안 심사부 부장 刘志会



었다.

2014년 접수한 실용신안 출원양은 2013년보다 다소 줄긴 했지만, 2015년 심사처리기간 3.5 개월에서 2.9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2015년 접수한 출원은 112만 8000건으로 29.8% 증가하였다. 또한 발급한 특허는 87만 6000 건으로 23.8% 늘었다. 더 나아가, 특허권 사법보호와 특허 실행의 측면에서 봤을 때 실용신안은 소송, 허가, 압류 등 분야에서 발명, 디자인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

2014년 4월, 웨이팡(潍坊) 중급인민법원은 Goertek 의 놀스전자(knowles전자, 쭈저우)의 특허 침해 소송에 관한 부분판결<sup>16)</sup>에 따라, 놀스전자(쭈저우)의 권리 침해제품 생산 및 판매 중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7440만 위안의 배상액을 부담하도록 고지했다. 본 사건은 중국 실용신안의 거대한 위협을 보여준다. 웨이팡 중급인민법원은 특허 침해에 근거가 되는 특허 두 가지 - CN200820187748.7와 CN201020515145.2를 실용신안으로 인정했다. 2007년의 정타이(正泰)의 슈나이더일렉트릭 권리침해소송사건<sup>17)</sup>은 지금까지 중국 특허 소송에서 배상액이 가장 큰 사건(1십 배상액 3억 3000만 위안)이었는데 그 근거 역시 실용신안이었다.

이에 따라, 실용신안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지적재산권은 많은 외국계기업, 특히 중국에서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이 되고 있다. 물론 실용신안은 실질 심사와 검증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발명보다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실질 심사 절차가 없기 때문에 발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를 부여하는 데 용이하다. 권리가 주어지게 되면 기업의 특허인은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리를 부여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에 근거, 허가 없이 진행하는 제조, 사용, 판매, 허가판매와 수입 등 생산 경영 목적에서의 타인의 모든 행위를 저지할 권리가 있고,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주도권을 지닌다. 중국 정부가 실용신안 제도에 대해 여러 범규를 내 놓고 있고, 배상액을 높이고 있으며, 징벌성 배상<sup>18)</sup>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실용신안특허권의 안정성 및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 III.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권은 실질심사 없기 때문에 무효심판을 받을 가능성이 비교적 크고,

16) (2013) 潍知初字第255号, (2013) 潍知初字第256号

17) (2006) 温民三初字第135号

18) 중국특허법 제65조

권리효력의 안정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자가 낮은 안정성을 근거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0년 〈중국특허법〉 2차 개정에서는 〈중국특허법〉 57조 2항 중의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인민법원 혹은 특허 관리 업무 부처는 권리자에게 국무원 특허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검색보고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발명 특허는 비교적 잘 갖춰진 실질심사제도가 있기 때문에 검색보고 제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2001년 〈중국특허법〉 개정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특허법실시세칙》을 개정하여 실용신안특허권의 수여 결정공고 후, 실용신안 특허권자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처에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 작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용신안특허 검색보고서는 당해 실용신안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평가한다<sup>19)</sup>. 2008년 〈중국특허법〉 3차 개정 시 관련 실용신안 검색보고 규정을 수정하였고, 검색보고를 특허권평가보고서로 바꾸었으며, 특허권자 외에 이해관계인을 추가, 관련 조항을 61조 2항과 같이 개정하였다.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특허와 관련한 특허 침해인 경우 인민법원 혹은 특허 관리 부처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관련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검색, 분석 평가 후의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이를 특허 침해 분쟁의 심사, 처리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2010년 《중국특허법실시세칙》를 다시 개정하여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 특허권 수여결정 공고 후 중국 특허법 제60조가 규정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처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청구할 수 있다<sup>20)</sup>. 또한 임의의 법인 또는 개인은 상기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sup>21)</sup>.

## 1. 특허권평가보고서와 구 검색보고서의 차이점

기존의 검색보고서에 비해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심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신규성과 진보성뿐 아니라 충분히 공개되었는지의 여부, 권리요청서가 설명서의 지원을 받았는지 등의 여부를 검사하기로 규정하였으며, 무효의 근거가 되는 사유들이 특허평가보고서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지침 제5부분 제10장에서는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상세하게 규정하였는데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이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제출한 특허권평가보고요청서를 받은 후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sup>22)</sup>. 이하, 평가보고와 구(舊)검색보고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19) 중국특허법 제55조 제1항

20) 중국특허법실시세칙 제56조 제1항

21) 중국특허법실시세칙 제57조

22)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10장 2

### 1) 청구주체

현행 <중국특허법>과 <중국특허법실시세칙>에서는 평가보고의 주체를 특허권자와 이해관계자로 지정하였는데, 구 법에서는 검색보고의 주체를 특허권자로만 규정했었다. ‘이해관계자<sup>23)</sup>’란 <중국특허법> 제6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특허침해 분규에 대해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혹은 특허관리부처에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특허권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요청자는 일부 특허권자일 수 있다. 허가계약을 위반한 실시권자(licensee) 역시 ‘이해관계자’ 일 수 있다.

### 2) 보고서내용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중국특허심사지침>의 제5부분 제10장 ‘인용’ 부분 규정에 따르면 현행 <중국특허법실시세칙> 제 65조에서 열거하는 무효 이유 중 ‘대외 보안심사 신청’과 관련된 무효 사유 외에 기타 특허권을 부여 받은 실질적인 요건과 무효로 만드는 사유 전부가 평가보고서의 평가 내용 안에 들어있다. 그러나 검색보고는 특허와 관련한 신규성과 진보성에 관하여 문헌 검색과 대조만 한 것으로 특허의 유효성, 확정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서술 평가가 없고, 결론 의견도 없다.

### 3) 처리시간과 공개여부

현행 <중국특허법실시세칙> 제 57조 규정에 따르면 평가보고의 처리시한은 2개월로 이 시한은 법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기간이다. 구 법의 규정에 따르면 검색보고는 구체적인 처리 시한에 대한 규정이 없고, 작성 후 공개 여부는 검색보고서를 요청한 특허권자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법률에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 4) 의견 제출과 보정

기존 실용신안 검색보고의 1차 의견 기술 기회는 의견 기술로 인해 보고서 발급 시간이 연기될 수 있기 때문에 후속 소송 절차에 영향을 주었고, 권익수호 비용이 늘어났으며, 권리확립 업무를 무효심판 절차와 소송 절차 뒤로 유보하였다.

2010년 판 특허 심사지침 제5부분 제10장에서는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구체 절차를 수정하던 중 평가보고의 부처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자체 수정하도록 하였다. 청구인은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수정이 필요한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sup>24)</sup>.

23)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10장 제2절 2. 2 请求人资格”规定

수정 후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즉시 청구인에게 발송되어야 한다.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아래의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수정할 수 있다<sup>25)</sup>: 1) 기록항목정보 혹은 문자오류, 2) 특허권평가보고의 절차 상의 오류, 3) 법률 적용이 명확한 오류, 4) 결론에서 근거로 삼은 사실 인정이 명확한 오류, 5) 기타 수정해야 하는 오류.

#### 5) 청구절차

기존의 실용신안 검색보고와는 달리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청구 수속이 간소화되어 청구인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청구인에게 특허 설명서와 특허 증거사본 및 청구서 안에 특허의 법률형태와 첨부에 관련 증빙서류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청구인이 이해관계자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관련 특허 실시 허가 계약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 등록번호 만을 기재하면 특허 허가 계약과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표 6〉 중국 실용신안 검색보고서와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차이점

	실용신안 검색보고서 (2009年10月1日 전)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 (2009年10月1日之后)
(a) 청구주체	특허권자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인
(b) 보고내용	특허의 신규성, 진보성만을 보며 특허권의 유효성과 결론은 고려하지 않음	신규성과 진보성 외에 특허 권리를 부여하는 실질성 요건과 특허 무효에 관한 사유
(c) 처리시간과 공개	규정 없음. 공개 여부는 특허권자 결정	2개월 모든 기관 혹은 개인이 열람 가능
(d) 의견 제출과 보정	한 차례의 의견 제출 기회	의견 제출의 기회는 없지만 특허권자가 평가보고서에서 오류라고 인정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음
(e) 청구절차	절차복잡, 여러 증빙서류 제출해야 함	절차 간소화

## 2. 중국과 한국의 특허평가제도 비교

상기와 같이 중국은 현재 실용신안의 안정성을 부여하기 위해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를 실행하고 있고 한국 또한 2006년 특허법 개정하기 전에 중국과 유사하게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모방이 용이한 실용신안기술을 조기에 보호하고 중소기업의 사업화 및 기술 개발의 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심사제도와 기술평가제도를 실행했었다. 그러면 중국과 한국의 특허

24)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10장 제6절

25)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10장 제6절 6.1

평가제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아래 중국과 한국 실용신안제도의 차이점을 통해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한국의 실용신안법은 세 가지 제도를 하나의 법률에 병존시키는 중국특허법과 달리, 독립적인 법률로써 실용신안을 보호한다. 1996년부터 실용신안 특허권의 보호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1999년에 기초적 요건 심사만 거치면 등록이 되는 무심사 선등록제도로 개정했다. 그러나 실질심사를 하지 않고 실용신안을 허가하기 때문에 부실한 권리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며, 유·무효 분쟁의 소지가 높고, 권리의 안정성이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다시 개정하여

〈표 7〉 중국과 한국의 실용신안 제도 비교<sup>26)</sup>

	중국	한국
보호 대상	〈중국특허법〉에 근거함 특허법에 속함, 제품의 형상, 구조 혹은 결합 부분에서 실용적이고도 새로운 기술안이 적용 된 경우(중국특허법 제2조)	독립적 〈한국실용신안법〉에 근거함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구조 또는 조합(한국실용신안법 제4조)
법적 효력	실용신안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 한다 (중국특허법 제40조). 실용신안 특허권의 기한은 10년으로 출원일로부터 계산된다(중국 특허법 제42조).	실용신안 특허권리는 실용신안법 제21조(1)항 에서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실용신안 출원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효력을 상실한다 (한국실용신안법 제22조)
심사 제도	실질심사가 없고, 심사처리기간은 3-4개월, 대 기 공고시간은 2-3개월	발명 특허 심사제도와 동일함. 심사처리기간은 2015년 기준으로 약10개월. (1)실용신안등록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만 이를 심사한다. (2)누구든지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 하여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 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한 국실용신안법 제12조)
권리 행사	실용신안 권리를 받은 후 특허법에서 다른 규 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기관 혹은 개 인은 허가인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권리를 실시할 수 없고, 생산 경영 목적으로 제 조, 사용, 허가판매, 판매, 수입을 할 수 없으며 본 특허방법에 근거하여 특허방법, 사용, 허가 판매, 판매, 수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중 국특허법 제11조)	실용신안은 소유자가 상업적 혹은 업무 상 이 미 등록한 실용신안의 독점적 권리를 갖는다. 실용신안 독점권 허가를 얻은 허가인이 상업적 으로 실용신안 특허권을 실행하는 경우 등록된 범위 내에서 실행하여야 한다.
권리 보호	실용신안 특허권자는 인민법원에 권리 침해 소 송 제기 시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를 근거 로 삼아 실용신안 특허권을 보호한다.	2006년 이후 기술평가제도 폐지됨. 발명 특허 와 통일
권리 취소무효	이의신청, 무효심판청구	심사청구, 무효심판청구

26) 출처: 〈한일중 실용신안제도 비교표〉2013한일중특허심사연합전문가그룹(JEGPE)  
http://www.tripo.org/cn/secondpage/jegpe.html

2006년10월1일부터 기술평가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실용신안제도는 발명 특허와 동일하게 실질적 심사 제도를 실행한다<sup>27)</sup>.

2006년 특허법개정 이전 도입했던 한국의 구(舊)기술평가제도는 중국의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달리, 실용신안 등록을 가능하게 하고 후에 권리의 유지나 취소의 결정이 필요한 경우, 한국 특허청이 수행하는 기술평가제도를 통해 그 권리성을 결정하여 주는 제도이다. 즉 심사의 결과가 등록유지 결정이나, 등록취소결정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권리행사를 위하여 기술평가라는 실질심사를 거쳐야 하는 변형적인 무심사 선등록제도의 성격으로 인하여 처리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와 달리 권리의 조기 행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sup>28)</sup>. 또한 한국의 구(舊)기술평가와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다른 점은 실용신안 특허권의 행사에 있어서 침해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술평가의 유지결정등본을 제시하고 경고해야 한다. 유지결정의 기술평가서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침해소송을 제기하여도 특허권자의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구(舊)기술평가보고서는 행정 처리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특허청이 구(舊)기술평가보고서를 작성했을 때 해당 실용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해야 특허권 유지결정을 내릴 수 있고, 만약 해당 실용신안이 거절 또는 무효이유가 존재하면 실용신안권에 대한 취소 결정을 제시할 수 있다. 중국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는 한국에서 시행했던 기술평가보고서와 달리, 이에 대한 강제성이 없고, 실용신안 특허권을 취득 후, 특허권자가 필요에 따라 국무원 특허행정부문에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을 행사 이전 또는 이후 다 가능하고 특허분쟁 시 증거로 사용하여 실용신안 특허권의 안정성을 부여한 것이다.

#### IV.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와 실용신안 특허분쟁

‘대의 보안심사 신청’과 관련된 무효 사유 외에 기타 특허권을 부여 받은 실질적인 요건과 무효로 만드는 사유 전부가 평가보고서의 평가 내용 안에 포함되므로 법률적 측면에서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의 특허성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침해 소송 제기 시 인민법원 혹은 특허관리 행정기관에 보고서의 결론을 근거로 실용신안 특허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특허침해사건의 심사중지여부를 판단한다. 그 밖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특허권자가 미리 특허권의 실제 상황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한 투자 손실과 연구

27) 한국특허청 실용신안의이해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102&catmenu=m04\\_01\\_02](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10102&catmenu=m04_01_02)

28)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연구〉 2003-7, 3-8면

개발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이해관계자는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권리 양도될 부분과 특허권의 안정성을 알 수 있고, 불필요한 투자손실과 소송비용을 막을 수 있다. 따라서 실용신안을 등록한 후 또는 실시하기 전에 미리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받으면 특허분쟁을 피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특허권평가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발급하지 않는다: (1) 아직 등록 받지 못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출원, (2) 재심사위원회에 의해 전부 무효한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 (3) 이미 특허권 평가보고서 받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권<sup>29)</sup>. 이하 특허권평가보고서가 실용신안 특허분쟁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1.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사법적 역할

2015년 1월 29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특허분쟁안 심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의 수정 결정<sup>30)</sup>을 발표하였고, 본 수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됨을 고지하였다. 위의 수정 결정은 <특허분쟁안 심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sup>31)</sup>제8조 1항에서 ‘2009년 10월 1일 전에 신청한 (신청일 제외) <중국 특허법> 제3차 수정 후의 실시 시작일부터 적용된 실용신안 침해소송의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 행정 부처에서 발급한 검색 보고를 제출할 수 있고, 2009년 10월 1일 이후 제출한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의 경우 원고는 국무원 특허 행정부처에서 발급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사건 심사 필요에 따라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검색보고 혹은 특허권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를 내리거나 혹은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술한 내용 수정 후 사법 해석의 조향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침해소송 제기 시 실용신안 혹은 디자인 특허의 특허권자는 법원에 평가보고서 제출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동시에 특허권자가 소송 제기 시 법원에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사 결과 특허권평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원고에게 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침해소송에서 일반적으로 원고가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특허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특허침해소송 여부를 결정한다. 반대로 피고는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원고의 실용신안 특허권이 특허성을 구비하는지 검토하여 대응전략을 세운다. 그렇다면 특허권평가보고서 제도는 실용신안의 침해소송에 어떤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을까?

29)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 제10장2.1

30) 2015년1월19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641번 회의에서 통과됨

31) 2001년6월19일 최고인민법원심판위원회 제1180번 회의에서 통과됨

### 1) 소송중지

최고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고가 특허 재심위원회에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한 상황, 혹은 원고에게 일정 기한을 주고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한 상황에서 특허 재심위원회의 심사결과 혹은 평가보고서의 대기를 이유로 법원은 소송 중지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만약 피고가 특허권 무효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일정 기한을 주어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원고가 제공을 거절하는 경우 법원은 소송을 직접 기각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 특허권의 초기 증거로서 참고용으로 제공되고, 실용신안 특허권의 법적 상태가 이로 인해 변하지 않는다. 즉,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이 권리자에 유리하지 않아도 특허가 무효하지 않으면 권리자가 해당 특허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소송 중지는 원고의 '소송을 통한 특허권 보호'라는 목적에 위배될 수 있기에 기존의 목적에 따라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사건 심사에 특허권평가보고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음에도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허권에 부정적인 평가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관련 특허를 특허 재심위원회에 무효심판청구(无效宣告请求)<sup>32)</sup>를 제기하고, 무효심판을 청구할 때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 판결을 내리고 특허권 효력에 대한 특허 권리확립 절차 인정을 기다릴 수 있다.

### 2) 종래기술 항변

특허권자가 소송 제기할 때 피고는 일반적으로 해당 특허가 종래기술인지 요청할 수 있다. 상기 특허법(61조 2항과 같이 실용신안 특허와 관련한 침해인 경우 인민법원 혹은 특허 관리 부처는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인에게 국무원 특허 행정 부처에서 발급한 관련 실용신안 검색, 분석 평가 후의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특허권자가 평가보고서를 통해 자기 특허의 안정성을 확인하여 피고의 종래기술의 항변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검색을 통해 대비문서를 인용하여 실용신안 특허가 신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는지 평가하는데 피고가 또한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인용된 대비문서를 이용하여 자기기술 종래기술과 같거나 실질적으로 같다고 항변할 수 있다.<sup>33)</sup>

32) 중국특허법에서 심판은 불복심판청구와 무효심판청구가 규정되어 있는데 재심위원회가 이에 대하여 재심사 및 결정하고 출원인 또는 특허권자에게 통지함

33) 沈世娟, 薛宁. “论我国专利权评价报告制度——一起专利侵权案件引发的思考”, 84쪽, 2012



### 3) 무효심판

현행 중국의 특허권 무효심판제도에 근거하여 구(舊)검색보고제도 하에서는 검색보고가 특허권의 '신규성 혹은 진보성'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였기 때문에 소송 중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 <중국특허법>의 특허권 무효심판제도의 규정과는 큰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합리성과 정당성을 지닌다. 그러나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 하에서 본 제도는 검색보고에서부터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가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고 이미 상대적으로 독립된 법률제도로 발전되었다. 무효심판 사유와 비교했을 때 특허권 평가 내용은 '대의 보안심사 신청' 외에 다른 내용은 모두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특허권 무효 소송제도와 충돌이 발생한다.

## 2.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특허권 무효심판제도<sup>34)</sup>는 중국국가지식재산국에서 부여한 특허권 발생일부터 모든 기관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특허재심위원회에 해당 특허권의 무효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중국 특허권 무효심판제도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특허법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발명과 창조에 부여한 특허권을 바로잡고 특허권에서 부여한 공정성을 수호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권 무효 청구에 대해 즉각 심사, 결정을 하며 청구인과 특허권자에게 즉각 통지한다<sup>35)</sup>. 특허권 무효 결정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처에서 등록, 공고한다. 무효된 특허권은 자동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sup>36)</sup>.

실제로 특허무효절차는 특허권의 경쟁자로 간주되었고, 특허 침해 통제를 반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허 침해 소송 발생 시 피고는 통상 무효심판을 요청하기도 한다. 업계의 특정 기술에 대해 업계 인사들은 특허권에 불공정 독점 발생 시 특허무효 절차를 가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밖에 실용신안 특허권 무효심판은 중국의 발명 특허는 권리 부여 전에 실질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무효심판 절차는 특허에 대한 재검증이라는 사실에 의의가 있다. 실용신안 특허권은 이와는 달리 권리 부여 전에 실질심사가 없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가 특허 소송 중에 특허권 무효심판이라는 본 제도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 무효심판 절차는 실질심사를 거치지 않은 실용신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이기도 하다.

34) 중국특허법 제45조

35) 중국특허법 제46조

36) 중국특허법 제47조

〈표 8〉 중국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sup>37)</sup>

	특허권평가보고서 (2009年)	특허무효심판 (중국특허법제정부터)
청구인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	기관 혹은 개인
구체적인 처리기관	국무원 특허행정부처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특허 재심사위원회
심사절차	2개월	법정기한은 없으며 일반적으로 1년
구제절차	신청인이 특허권평가보고에 기재된 오류만 수정을 요청 가능	특허문서 수정가능
심사 혹은 평가내용	중국특허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 25조, 제26조 제3,4항, 제27조 제2항 제33조, 실시세칙 제20조 제2항, 제 43조 제1항	중국특허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20조제 1항 <sup>38)</sup> , 제22조, 제23조, 제 25조, 제26조 제3,4항, 제27조제2항, 제33조, 실시세칙 제20조 제2항, 제43조 제1항

위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특허권평가보고와 특허권무효심판제도는 청구주체, 구체적인 처리기관과 심사절차, 구제방식 등 형식적으로 차이가 있다. 가장 현저한 차이는 특허명세서에 대한 보정이다.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특허권자가 특허권평가보고서에 기재된 오류만 수정 요청할 수 있으나 무효심판은 아래와 같이 출원명세서에 대한 보정을 실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심사 혹은 평가 내용을 보면 실질 요건은 일부 비슷한 점을 알 수 있다.

#### 1) 제도의 수립목적 일치

적용하는 법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평가보고제도와 특허권무효소송제도 두 제도의 수립 목적은 기본적으로 일치하며 특허에서 부여한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지 않은 채 부여된 특허권을 중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2) 심사 혹은 평가 내용 일치

현행 특허권무효심판 절차에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특허재심위원회는 요청에 근거해 특허권 무효가 가능한 9종의 상황을 심사한다<sup>39)</sup>. 본 심사 내용과 현행 〈중국특허심사지침〉 제 5부분 제10장 제3절 ‘3.2.1 실용신안특허’에서 규정한 특허권 평가 내용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상기와 같이, 특허권평가보고서의 내용이 무효심판 과정의 심사내용과 유사하지만 특허권평가는 무효심판이 아니며,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에서 해당 실용신안이 신규성 및 진보성을 구비하

37) 중국특허심사지침 제5부제10장3.2.1특허권평가의 내용(3.2.1 실용신안)

38) 대외 보안 심사 신청

39) 중국특허법실시세칙 제65조

지 않거나 특허성을 구비하지 않는 이유를 기재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제시하지 않으면 해당 실용신안 특허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특허권평가보고서 및 무효심판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3. 실용신안 특허분쟁 사례분석

상기와 같이 중국특허권평가보고서의 특징과 역할에 대한 설명에 따라, 특허권평가보고서와 특허권무효심판은 특허분쟁에서 모두 항변(抗辯, Einrede) 및 구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는 실제의 사례를 통해 실증법(Positive Approach)로 특허권평가보고서와 특허권무효심판 제도가 충돌하는 원인을 찾아내고, 특허권 평가제도의 결론이 실용신안 특허권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겠다.

#### 실용신안 특허분쟁 사례분석

##### 〈사례〉<sup>40)</sup>

재심신청인 장자강시 형커신소재유한회사(이하 형커사로 칭함)는 피신청인 아오커플라스틱 제품(장자강)유한회사(이하 아오커사로 칭함)의 실용신안 특허권 침해를 놓고 1심 및 2심의 판결<sup>41)</sup>에 불복하여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다.

형커사는 재심을 신청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1) 아오커사가 1심 기소 전 특허국에 실용신안 특허 평가보고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기소 시 불리한 본 실용신안 특허평가보고를 제출하지 않았고, 1, 2심법원 역시 아오커사에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절차도 명백히 부당하였다. (2) 형커사가 재심 절차에서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관련 특허가 이미 교과서에도 게재된 기존의 기술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고, 그 중 권리 요구 1,3은 이미 교과서에서도 전부 공개된 바 있으며, 권리 요구 2에서는 造型条本体的 소재는 실용신안의 보호를 받는 객체가 아니라 한정 지었다. 아오커사의 모회사는 관련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관련 특허를 전시회와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여 형커사의 것은 현재의 기술이고, 원고에서 형커사가 실용신안 권리를 침해했다고 낸 결론은 잘못된 것이라 밝혔다. (3) 관련 특허는 이미 교과서에 게재되었고 아오커사의 모회사에서도 이미 공개하였으며, 관련 실용신안 특허와 같은 날 신청한 제 '201310251317.8'호 발명 특허 역시 심사위원들이 아오커의 모회사가 공개한 정보와 기존의 기술이기 때문에 진보성을 부정하고 기각하였다. 이는 관련 특허 역시 불안정하고 무효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함을 보여 준다. (4) 아오커사는 본 특허가 이미 공개된 기존의 기술이라는 것을 앞에도 불구하고 소를

40)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민사판결서(2016) 민선자(民申字)제712호

41) 장쑤성 고급인민법원민사 판결서(2015) 수즈민중자(苏知民终字) 제00262호

제기하였고, 1, 2심 절차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신청한 발명 특허가 이미 기각됐음에도 형커사가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히 주관적인 악의라고 주장했다. 형커사는 법원에 법에 근거한 본 안 재심을 요구하였다.

아오커사가 제출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재심 신청 시에서야 형커사가 처음으로 기존의 기술이라는 항변을 제기하여 소송 상의 충돌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를 심사해서는 안 된다. (2) 형커사가 제출한 본 재심 신청 사유의 관련 증거는 ‘새로운 증거’에 속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취득이 용이하고 1, 2심에서 고의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택해서는 안 된다. (3) 형커사가 제출한 증거는 실시 기술이 기존의 기술임을 증명하는 데 부족하여 형커사 실용신안 권리 침해라는 기존의 판결은 정확한 것이다.

### -법원의견-

아오커사가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민사 소송 법적 절차 상의 오류가 아니라 법원은 판단하였다. 형커사가 1, 2심에서 선사용권 항변을 주장하였지만 기존의 기술 항변은 주장하지 않았다. 재심 신청 단계에서 처음으로 제기한 기존의 기술 항변에 대해 법원은 심판하지 않았다. 이는 아오커사의 소송과 충돌될 뿐 아니라 1, 2심의 소송이 무의미하게 되어 법정에서 1, 2심 절차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커사는 재심 근거(3)등에 근거해 법에 따라 특허권 무효심판 청구를 하였고 아직 종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무효절차와 본 권리침해안은 서로 위배되지 않는다. 형커사가 주장하는 아오커의 소 제기에 악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증거가 없다. 결론적으로 형커사의 재심 신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0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상기 사실내용에 따라, 원고는 1심 소송 제기 이전에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실용신안에 대한 특허권평가보고서의 발급을 요청했지만, 소송과정에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의 내용이 특허분쟁에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 즉, 그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은 실용신안의 특허성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는 1 심 및 2심에서 원고의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취득하지 않았고, 소송과정에서 先用權 항변<sup>42)</sup>만 주장했다. 재심 과정에서 피고가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무효심판은 일정한 절차 및 시간이 필요하므로 소송이 더 길어진다.

만약, 피고가 1 심 및 2심에서 원고의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열람했다면 해당 실용신안 특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평가보고서의 사본을 취득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피고의 항변이 달라질 수도 있다. 즉,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특허권평가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42) 중국특허법제69조 제2항

원고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를 내리거나 혹은 원고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sup>43)</sup>.

#### 4.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의 충돌원인

상기 사례에 따르면 법원이 강제로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실용신안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은 특허침해소송의 당사자가 증거제출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 이하, 상기 사례의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에 가져올 수 있는 변수를 분석하겠다.

(1) 특허권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개시하면, 원고는 당연히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피고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 특허권평가보고서의 내용은 ‘대의 보안심사 신청’ 외에 다른 내용은 모두 무효심판 사유와 일치하기 때문에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의해 실용신안특허가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구비할 수도 있지만 무효심판 처리 기관과 특허권평가보고서 처리 기관이 다르므로 기술조사 결과에 따라 무효심판 심사결과와 특허권평가보고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

(2) 특허권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분만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시하면, 원고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 심사지침 제5부 제10장의 제5절 및 《중국특허법실시세칙》의 제57조의 규정에 따르면, 임의의 법인 또는 개인은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열람하거나 사본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의 부정적인 평가보고가 공개되어, 피고가 해당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평가보고서에 제시된 이유로 해당 실용신안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없다고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피고가 무효심판 청구 시, 법원은 소송을 중지할 수 있으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의 특허성만 확인하고 실용신안 특허권의 법적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무효심판 심사결정 내리기 전에 해당 실용신안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다<sup>44)</sup>. 또한 무효심판 심사과정에서 원고가 보정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실용신안의 특허가 진보성을 구비한다고 충분히 항변하면 재심사위원회가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의견과 반대 결론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심판 심사결과와 특허권평가보고서 의견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 경우에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43) 2015년2월1일부터 시행된 <특허분쟁사건 심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8조 제1항

44) <특허침해판정지침> 2013특허권유효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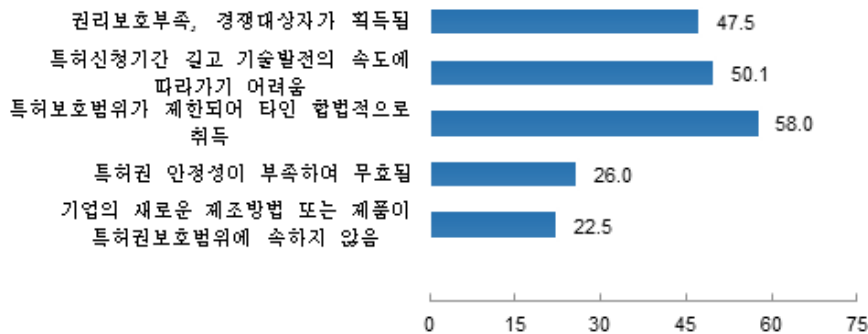
상기 사례 및 분석에 따라, 인민법원이 실용신안 특허권에 기한 침해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원고에게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도록 하는 주요한 이유 또는 원고가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제출여부는 바로 ‘특허권평가보고서의 결론’ 및 ‘소송의 중지 문제’와 직접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침해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의해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여 특허성이 확인된 것이라면, 법원은 침해소송에서의 피고가 무효심판을 제기하고 소송의 중지를 요구하더라도 소송을 중지하지 않을 수 있다<sup>45)</sup> 이는 무효심판을 감소시키는 효과 있고 사법처리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으나, 특허권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분만 부합한다는 의견을 개시하면,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 판결을 내리면 특허권 효력에 대한 심사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이 아니면 실용신안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나,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실용신안 특허에 대해 사법적 보호를 실행한 것이 또한 무효심판과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충돌된 원인이고, 즉, 특허침해소송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 할 수 없다.

## V. 중국 실용신안 권리보호 대응 전략

중국 국가지식재산국 2016년6월 발표한 중국특허조사(2015)에 따르면, 기업이 혁신 성과에 대한 보호는 아래 조사 결과와 같이 여러 제한이 있다. 특히 “특허 신청기간 길고 기술 발전의 속도에 따라가기 어려움”과 “특허보호범위가 제한되어 타인 합법적으로 취득”은 각각 50.1%

〈표 9〉 기업의 혁신 성과에 대한 보호 현황(%)<sup>46)</sup>



45) 〈특허분쟁사건 심사 적용 법률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제11조

46) 출처: 〈2015중국특허조사통계보고〉p25-26 조사유효통계량: 7496개 기업, 소수에 의하여 오차가 있어서 100%를 초과

및 58.0% 가장 집중되어 있고 이는 발명 특허에서 많이 나타나는 문제점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특허권평가보고서제도에 있어서 발명 특허보다 더 신속하게 취득할 수 있는 실용신안의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 1. 중국 실용신안 권리보호에 대한 전략

상기 설명된 바와 같이, 실용신안 특허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 지적재산권은 많은 외국계 기업, 특히 중국에서 무역활동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현실이 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또한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가 계속 증가세를 보이며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 수단으로 대기업은 행정 단속과 민형사상 조치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경고장 발송, 미 조치 등과 같은 소극적 대응을 취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피해에 대해 미 조치하는 이유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비용 대비 효과가 미비하고 비용이 과다하게 들어서라는 의견이 높다. 중소기업의 평균 대응비용은 47백 만원 정도로 대응 건수에서는 대기업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sup>47)</sup>. 중국에서 지재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재권 권리확보가 필수적이나 중국진출기업 중 중국에 지재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13.3%에 불과하다<sup>48)</sup>.

최근 일본, 미국 기업은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으나 한국 기업은 여전히 낮다. 2014년 기준으로 한국 344건, 일본 3009건, 미국 1705건이다<sup>49)</sup>. 실용신안 특허권 존속기간은 짧지만 요즘 기술이나 시장의 변화속도에서 볼 때 10년은 기술의 실질적 가치를 대부분 보호할 수 있는 기간이다. 따라서 한국 중소기업도 중국 실용신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권리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과의 교역이 많은 한국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 운영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으로 무형 자산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 2.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제도의 병행활용

2011년 중국은 한국의 전체 교역량에서 20.4%를 차지하여 일본(10%)과 미국(9.3%)을 제치고 최대 교역국가로 성장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우리기업의 지재권 피침해 최대 발생지로, 아직 중국에서의 지재권 분쟁에 대한 대응 능력은 미비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실용신안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 상기 설명 및 분석과 같이 특허권평가보고서의 주요 역할은 실용신안 특허를 유효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조건에 대해 평가하고

47) <중국 지식재산 소송제도의 변화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향 연구보고서> 수행기관 특허법인 정안 2015.6.10, 203면

48) 한국특허청 2012년 지재권 피해침해 실태조사결과(2700여 개 업체대상)

49) <중국진출 기업을 위한 중국 지재권 활용 및 보호 가이드> 2015년 한국 특허청발간, 10면

실용신안의 특허성을 확인하여 특허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되고 있으나,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기에 권리보호에 대한 유효성은 부족하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실용신안 특허권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보호정책을 추진하려는 추세에 따라, 특허권평가보고서와 무효심판제도를 병행 활용하여 충돌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허 침해 소송 중, 특허권평가보고서는 법원이 특허권의 안정성에 대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돕고, 피고가 특허권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황에서 권리침해 사건에 대한 심사 중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다. 그러나 실제로 법원이 강제로 요청하지 않는 한 실용신안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권평가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특허권 침해 소송준비 시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자발적으로 특허권평가보고를 발급하고 소송 시 법원에 제공할지 여부는 실용신안의 구체적인 상황과 소송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 특허권자 혹은 이해관계자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고, 더불어 소송에서 특허권 심판무효 결정 제기로 인해 심사가 중지되길 원하지 않는다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특허권평가보고를 신청하고 소송제기 시 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권리 침해 소송이 경쟁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긍정적인 특허권평가보고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에 특허권평가보고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송제기 시 이를 법원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그 이유는 소송제기가 주요 목적이고 최종 승소 여부 또는 특허권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심판무효가 제기가 되었는지의 여부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허권이 최종적으로 상대방에 의해 심판무효가 되었다 하더라도 특허권 무효심판 역시 법률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특허권자 및 이해관계자 입장에서는 특허권평가보고서를 통해 미리 특허권의 실제 상황을 알아내고, 권리 양도될 부분과 특허권의 안정성을 알 수 있다면 불필요한 투자 손실과 연구개발 및 소송 비용을 막을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 피해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특허권자의 실용신안 특허권평가보고서를 미리 열람 또는 평가보고서의 사본을 취득하면 해당 실용신안 특허의 평가의견에 따른 대응전략을 세울 수 있다.

## VI. 결 론

중국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실용신안과 디자인의 특허성에 대해 평가함으로써 실용신안과 디자인 특허권의 안정성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권리의 남용을 방지하고 무효심판을 감소시키



는 효과가 있고 사법처리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특허권평가보고서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이 실용신안특허권의 유효성에 대해 일방적으로 내리는 평가의견이며 특허권자에게 확실한 보장을 주지는 못한다. 또한 특허권평가보고서에서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부분만 부합한다는 의견이 개시되면, 인민법원은 소송 중지 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특허권 효력에 대한 심사 결정을 기다려야 하고, 소송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무효심판의 최종 결정이 아니면 실용신안 특허권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따라 특허권평가보고서는 권리 보호에 있어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중국의 과학기술혁신 능력은 여전히 열악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을 보호하는 실용신안 특허가 중국 특허보호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 내 중소기업의 발명과 창조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자국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해 실용신안에 특허평가보고와 비슷한 특허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과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하지만, 동일 출원인이 동일한 날 동일한 발명과 창조에 대하여 실용신안특허와 발명 특허를 출원하여, 먼저 취득한 실용신안특허권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출원인이 당해 실용신안 특허권을 포기할 경우, 발명 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특허 출원할 때 더욱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만약 우선 취득된 실용신안특허에 대한 특허권평가보고서에 실용신안 특허가 권리 부여조건에 부합한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개시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실용신안을 포기하고 발명 특허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실용신안 제도는 한국기업이 특허권평가보고서와 함께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할 충분한 필요성을 갖고 있다.

## 참고문헌

- 구대환 (2005), “실용신안제도에 의한 소발명의 효과적인 보호방안”, 『서울대학교 법학』, 46(4): 285-311.
- 정덕배 (2010), “제3차 중국 특허법 개정에 따른 우리기업의 대응방안”, 『지식재산21』, 159-179.
- 특허법인 정안 (2015), 『중국 지식재산 소송제도의 변화 및 국내기업의 대응방향 연구보고서』, 203.
- 특허청 (2014), 『우리기업 해외진출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보호 가이드북』,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편.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2003),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기발전방안 연구』,

13-16.

知识产权与社会经济发展项目, 「中国企业专利申请动机及实施与产业化研究」, (CDIP/5/7 Rev.), 10-13.

国家知识产权局 (2010-2015), 「中国知识产权保护状况」, 白皮书.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2012), 「中国实用新型专利制度发展状况」, 全文.

国家知识产权局 (2015), 「中国专利调查数据报告」, PART5, 专利保护情况, 25-26.

刘谦 (2015), “我国专利权评价报告制度研究及其完善建议”, *中国发明与专利*, 2: 37-43.

卫珊 (2012), “论我国实用新型专利权评价报告制度的完善”, MS thesis, 南京大学.

孙琴 (2009), “我国实用新型法律保护制度探讨”.

吴用平 (2012), “关于专利权评价报告制度的新思考以实用新型专利为视角”, *中国律师*, 12: 030.

沈世娟·薛宁 (2012), “论我国专利权评价报告制度——一起专利侵权案件引发的思考”, *知识产权*, 7: 80-84.

刘谦 (2014), “我国专利权评价报告制度研究”, MS thesis, 中国政法大学, 4-20.

孔祥俊·王永昌·李剑 (2010),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电子知识产权*, 2: 76-80.

中华人民共和国国家知识产权局 (2010), “专利审查指南”.

法释 (2015), 4号,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专利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规定”, 的决定.

法释 (2016), 1号,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侵犯专利权纠纷案件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二)”.

国务院法制办公室公布国家知识产权局报请国务院审议 (2015), “中华人民共和国专利法修订草案 (送审稿)”.

---

### 호호림

한국과학기술원 지식재산대학원 석사학위를 획득했고 특허법인 무한에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중국 지식재산제도, 지식경영 등 이다.